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579
----------	-------

발의연월일 : 2026. 8. 13.

발 의 자 : 이달희 · 김대식 · 안철수
유용원 · 박형수 · 최보운
박충권 · 김상훈 · 임종득
임이자 · 이만희 · 유의동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에 미용성형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외국인관광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용역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가 2025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글로벌 의료관광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가격 경쟁력이 저하되고 외국인 환자 유치 동력이 약화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외국인 관광객의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내 의료관광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 관련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7조의3제1항).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7조의3제1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환급 대상 의료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7조의3(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관광객(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관광객”이라 한다)이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u>2025년 12월 31일까지</u> 공급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용역(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상 의료용역”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환급대상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제107조의3(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특례) ① ----- ----- ----- ----- ----- ----- ----- ----- ----- <u>29년 12월 31일</u> ----- ----- ----- ----- ----- ----- ----- -----.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